

규정/REGULATION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관련 항목: ABA-RB, COA-RC, COB-RA, EGF-RB, EGI-RA, EKA-RA, GCA-RA, IRB-RA, JOA-RA, KBA
 담당 사무소: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Office of the Chief of Staff;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공공 정보 Public Information

I. 목적

Montgomery County 교육위원회 정책 KBA, *공공정보에 관한 정책*의 시행 절차를 수립하고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에 관한 공공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정합니다.

II. 정의

- A. 공공 정보(Public information)란 MCPS 가 보유 중이며, 연방, 주, 지역 법률, 규정, 정책에 따라 공개가 면제되지 않는 정보를 뜻합니다.
- B. 학생의 하루 일과는 학생이 등교하는 시간에 시작하여 하교 종이 수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시간에 종료됩니다. 규정 ABA-RA, *학교 방문자(School Visitors)*는 학생의 하루 일과 중 수업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MCPS 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III. 행정절차

- A. 공공 정보 공개
 - 1. MCPS Communications Department 는 교육감 명의의 정보 공개, MCPS 직원, 학생, 학부모/후견인과의 교육구 전체 커뮤니케이션, Maryland Public Information Act(MPIA)에 따른 정보 요청의 접수, 공공기록의 관리인으로서 MCPS 의 의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2. 학생 또는 직원의 개인 정보 또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은 연방법 및 이사회 정책 KBA, *공공 정보에 관한 정책(Policy on Public Information)*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 및 학생 및 직원 정보 공개에 관한 적절한 프로토콜과 모든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a. 학교장/지명인은 학생 디렉토리/개인신상정보 정보를 포함한 학생 기록의 공개를 책임지는 수석 관리자로서, 공동 책임 사무국/중앙 기록 부서와 협의합니다. (MCPS 규정 JOA-RA, *학생 기록(Student Records)*도 참조)
- b. 직원은 MCPS 고용으로 인해 취득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독점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예외는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의 책임자(chief)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MCPS 규정 GCA-RA, *직원의 이해충돌(Employee Conflict of Interest)* 참조)
- c. 교직원에 대한 정보 공개는 관련 법률과 MCPS 규정 EGI-RI,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정보 공개(Release of Information on Students and Employees)*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d. 직원은 자원봉사자에게 학생 기밀 정보 또는 인사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B. 비상시 안내

1.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 a. 날씨 및 비상사태와 관련된 휴교, 등교 지연, 조기 하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조정; 그리고
 - b. 긴급 정보 배포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사용 및 그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
2. MCPS 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전달하며 그러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명확하고 간결하며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설명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새로운 사건에 관한 공개 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 지정은 MCPS 규정 COB-RA, *사건 보고(Incident Reporting)*, 섹션 V, 그리고 법 집행 기관과의 적용되는 양해각서에 따릅니다.
4. 주요 사실을 파악 및 확인하고, 법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결정하며, 관련자의 기밀,

개인정보 보호 및 적법 절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 COB-RA 에 명시된 지정된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5. 긴급 상황에서는 학교 교육감, 학교장,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부서장 또는 public information officer 를 제외한 어떤 직원도 뉴스 미디어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은 특히 복잡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서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MCPS 커뮤니티에 전달하려는 MCPS 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6. 뉴스 미디어 또는 기타 기관의 문의
 - a. 뉴스 미디어 담당자는 모든 문의를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나 MCPS public information officer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b. 교장 및 기타 관리자는 학교 및 사무실에 직접 정보 요청 또는 면담 요청이 있을 경우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디렉터 또는 public information officer 에게 알려야 합니다.
 - c. 새로운 미디어 문의는 해당 관리자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 i. MCPS 직원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중이나 언론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할 것을 권장합니다.
 - ii. MCPS 직원은 자신이 완벽하게 알고 있거나 직접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교육위원회 정책이나 MCPS 규정 또는 관행을 대변해야 합니다.

C. 학생 사진

1. 학생의 사진이나 기타 유사 초상화 등은 MCPS 규정 JOA-RA, *학생 기록(Student Records)*에 명시된 대로 디렉토리/개인신상정보로 간주됩니다. 학부모/후견인/적격 학생은 MCPS 양식 281-13, *명부 정보 및 학생 개인정보 연간 고지(Annual Notice of Directory Information and Student Privacy)* (이하 “디렉토리/개인신상정보 보류양식/directory withhold form”)를 작성하여 MCPS 가 학생의 사진이나 기타 유사 초상화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디렉토리/개인신상정보 보류양식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MCPS 는 다음과 같은 출판물에 학생의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a. 가상 강의
 - b. MCPS 또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또는 교육구 전체 미디어, 또는
 - c. MCPS 가 외부 뉴스 미디어에 공개하는 학교 관련 관심 기사
3. 장애 학생의 사진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이미지에는 학생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4. 학생의 하루 일과 중 학생의 사진 공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 a. MCPS 는 명부 보류 양식에 지시된 경우, 교실에서 학생의 사진이나 기타 유사 초상화 등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b. 뉴스 미디어 담당자 및 학교 방문자는 학교장/대리인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학생의 하루 일과 중 학생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 c. 교사와 기타 교직원은 학교 관련 활동이나 과제를 위해 비디오 녹화, 오디오 녹음 또는 사진 촬영을 사용하려는 경우 학부모/후견인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5. MCPS 학교나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의 사진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서면 동의를 확보해야 다음 중 하나에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 상업 광고 목적
 - b. 제출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는 출판물 또는 기타 용도
 - c. 저자가 보수를 받는 책 또는 출판된 기사의 삽화 제공

관련 자료: Federal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20 U.S.C. §1232g; 34 CFR Part 99

규정 변경사: 이전 규정 번호 2601, 1979년 4월 25일, 2024년 12월 23일 개정.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